‘증빙서류‘ 완벽하게 구비 시 지원 가능
(市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)

[남부거점]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공고(4차)

□ 사업개요

○ **사업목적 :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**

○ **지원내용 : 창안개발, 제품생산, 판로개척 공급가액 소요비용의 60% 지원(단위별 기업당 연 1회)**

- **연간 2천만원 한도 내 신청(선정은 연 기업당 최대 3건), 기업 자부담 40%, 부가세 및 초과분은 기업부담**

분야	단위 지원사업	지원내용	참여 市	구분
창안개발	국·내외 산업재산권 출원_택1	· 국내상표출원 : 2단 25만원 이내 (중비용의 60%, 최대 200만원) · 국내디자인출원 : 2단 35만원 이내 (중비용의 60%, 최대 280만원) · 국내특허출원 : 2단 130만원 이내 (중비용의 60%, 최대 520만원) · 실용신안출원 : 2단 90만원 이내 (중비용의 60%, 최대 360만원) · 해외상표출원 : 2단 250만원 이내 (중비용의 60%, 최대 500만원) · 해외특허(PCT)출원 : 2단 250만원 이내 (중비용의 60%, 최대 500만원)	수원, 화성, 오산, 평택, 안성	* 사후신청 (26.1.1.이후 취득·참가 지출 완료분 인정)
제품생산	시험분석 지원	· 시험분석 : 최대 200만원 (중비용의 60%) · 국가공인 전문시험, 분석기관, 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에서 공인된 시험성적을 자체 보유한(기관) 으로 시험 장비를 활용한 시험분석이 완료된 기업	수원, 화성, 오산, 안성 (평택 X)	
판로개척	국·내외 전시박람회_택1	· 최대 300만원 (중비용의 60%) · ‘국내’ 에서 개최되는 전시박람회 참가 완료한 소요비용 지원 · 최대 500만원 (중비용의 60%) · ‘해외’ 에서 개최되는 전시박람회 참가 완료한 소요비용 지원	화성, 오산, 안성, (수원 X, 평택 X)	

☞ 사후신청 : 기업이 과제 주진 프로세스(비용지출 포함)를 모두 완료한 건에 대해 신청 가능 (진행 예정, 진행 중 X)
* ‘26. 1. 1. 이후 취득·참가 지출 완료분 인정(※ 증빙 : 출장면호 통지서, 시정성적서, 국내·외전시회 참가 및 비용 지출 완료 등)

○ **접수기간(4차) : ‘26. 11. 27.(금) 09:00 ~ 12. 14.(월) 18:00**

○ **선정결과 발표 : ‘26. 12. 18.(금) 18:00 이내 (예정)**

○ 사업기간 : 2026년 1월 ~ 2026년 12월

- **市별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에 사업이 종료됩니다.**
- 모집 마감일(**26년 12월 14일 월요일**) 전에 신청서 접수완료 적극 추천드리며, 마감일 경기기업비서 접수 사이트 다운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. (전화문의 031-672-3588)

□ 지원대상

○ 사업비 출연 시·군 소재 **2025년도 연매출 120억원 이하 중소기업**으로,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
* 중소기업 범위기준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)

①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**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·군 내 소재한 기업**

- **본사 또는 공장 주소지 : 수원, 화성, 오산, 평택, 안성시**

② **제조업** 또는 **지식기반서비스업**을 영위하는 기업

- **지식기반서비스업** : ‘산업발전법 제8조 2항,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 (**별표1 참조**)

< 참고 : 사업운영 거점/시·군 현황 >

남부권(5) : 수원, 화성, 오산, 평택, 안성시

- 사업비 출연 시·군 소재 창업보육센터 또는 벤처협회시설 입주기업,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기업 우대

○ **지원제외(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)**

■ 공고일 기준,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·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① 휴·폐업 중인 기업
②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
③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
④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
⑥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(**별표2 참조**)
⑦ **민원야기,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**
⑧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

□ 지원절차

*** 사후신청**

사업신청 (비용완납) (신청기업) ➡ 심사 평가 (적합·부적합) ➡ 심사 결과 통보 ➡ 지원금 지급 (경과원)

□ 신청방법

○ **접수기간(4차) : 2026. 11. 27.(금) 09:00 ~ 12. 14.(월) 18:00 까지**

○ 신청방법 : **사업관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‘경기기업비서’ (www.egbiz.or.kr) 및 부속서류 업로드**

- 경기기업비서 접속 → 남부권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검색 → 단위 지원사업 클릭 → 신청하기 버튼 클릭 →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(일체) 업로드 → 온라인 신청하기(완료)

○ **4차 선정결과 발표 : 12월 18일(금) 이내 18:00 예정** (선정여부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개별 안내)

○ **제출서류** (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부속서류 업로드) * **2026년도 11~12월 발급분만 인정.**

구분	제출서류
필수 제출	① 단위사업별 신청서 (온라인 작성) ② 단위사업별 지원금신청서 ③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(온라인 작성) ④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(국세청 발급) ⑤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(**기업 자율 선택**) ⑥ 해당사업 견적서 ⑦ **25년도 재무제표 (국세청 또는 세무서)** * **25년도 재무제표가 미경산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, 24년도 재무제표와 25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** 제출 ⑧ 지방세 납세 증명서 (민원24 발급) ⑨ 일자리 증가 (**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** (2024년도, 2025년도 **각각 12월 귀속분** / 국세청 발급))
가점 항목 (해당시)	· 공장등록증명서(민원24 발급) · 국내외 각종 보유 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· 보유 산업재산권(국내외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등) 등록증 * **ISO 시스템 인증 제외**

※ **제출서류(미비) 보완기간 : 12. 15.(화) ~ 12. 16.(수) 기간 준수 및 기간 內 미제출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.**

□ 기타사항

○ 신청 시 유의사항

- **제출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, 기간 내 보완이 없는 경우 검수에서 배제 됨**
- **사업 공고문 및 세부운영기준, 유의사항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**
- 작성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
- 결산 등의 이유로 **25년도 재무제표**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, **24년도 재무제표 및 25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** (국세청 발급)을 함께 제출
- 재무제표 작성·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(국세청 발급) 제출
-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, 체납여부 사전 확인 필요
- **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여부, 휴·폐업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명**(국세청 발급) 제출
  ※ **사업자등록증 불인정**
- **공장등록유무 확인을 위한 공장등록증명서**(민원24 발급) 제출
  ※ **공장등록증은 불인정**

○ **지원결정의 취소**

- **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**
- 지원과제의 지출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거나, 비용 증빙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완료 불인정
-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
- **사업비 출연시군 이외(또는 신청 거점 이외 지역)으로 사업장을 이전**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
- 결과보고서 등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,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
- 기타 경기도정책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신청기업에 부도, 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
  ☞ 신청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시 차년도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○ **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**

- 사업자가 총 소요비용 전액(부가세 포함)을 선 지출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,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신청기업 지정계좌로 지원금 지급
  - **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**(단,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사유가 있는 경우 미사용 사유서 제출)
  - (법인)카드 사용 시 (법인)카드 사본, 카드사용 영수증, 법인카드 이용내역 명세서를 제출
  - 부가세 및 관세 등의 사후 환급금, 지원한도 초과분은 기업의 부담으로 함
  - **지원금 지급 시 천원미만 절사(천원단위 입금) 하여 지급**

○ **위법·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**

- 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정책과학진흥원 「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
①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
②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, 금품·향응제공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 시)
③ 향후 지원배제(금액과 횟수,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)
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

□ 문의처 (주소 : 안성시 비룡5길 30 (석정동)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102호 남부거점센터)

거점구분	지 역	담당자
남부거점 (남부거점센터)	수원·화성·오산·평택·안성	031-672-3588
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